

2012년 달라지는 제도

바로 알기 & 바로 알리기

Contents

2012년 이렇게 시행합니다

- 중랑구 달라지는 제도
- 서울시 달라지는 제도
- 중앙부처 달라지는 제도



중랑구 달라지는 제도

행정·일반생활분야	4
경제분야	16
복지·교육분야	23
디자인·건축분야	31
환경·교통분야	35
보건·건강분야	42

Chapter

01

행정·일반생활 분야

- 01 불공정 하도급 부조리 개선 시행
- 02 일상감사 시행
- 03 민원처리속도 및 고객만족도 개선 “민원 알림서비스” 시행
- 04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 05 동주민센터 목요 야간민원 예약제 시행
- 06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 07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 08 야간 민원실 운영
- 09 일부사항증명서 발급
- 10 등기우편을 통한 여권 교부
- 11 주소 일괄 변경 제도 시행

01 불공정 하도급 부조리 개선 시행

감사담당관(2094-0223)

추진 개요

- 대상사업 : 하도급계약 체결한 건설공사 현장
- 추진내용
 - 하도급 계약사항 관련 서류 점검 : 분기별
 - 사업비 2억원 이상 주계약 공동도급제 이행 여부
 - 하도급 직불제 및 표준계약서 사용 이행 여부
 -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여부
 - 중랑구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연중
 - 하도급개선 전담반 운영 : 연중
 - 구 성 : 재무과 외 6개 부서 14명
 - 내 용 : 분기별 또는 주요사안 발생 시 업무회의 개최
- 점검방법 : 하도급계약 관련서류 점검 및 현장 확인

기대 효과

- 건설공사 현장의 오랜 관행인 하도급 부조리를 개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정착

시행일

- 2012. 1월부터

02 일상감사 시행

감사담당관(2094-0223)

추진 개요

- 대상기관 : 종량구 본청(담당관·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
- 대상사업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
 - 구청장, 부구청장 지시사항 등
 - 계약업무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국공유재산 자산 매입·매각 등에 관한 사항
 - 예산관리업무
 - 예산의 이·전용, 예비비 집행, 지방채 발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일상감사대상 업무
 - 예산·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 제·개정과 인사 및 정원관리, 중요 소송 등에 관한 사항
- 절 차
 - 최종결재권자 전 일상감사 처리절차에 의거 감사담당관으로 요청
- 추진내용 :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지감사 병행

기대 효과

- 주요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점검을 통하여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

시행일

- 2012. 1월부터

03

민원처리속도 및 고객만족도 개선

“민원 알림서비스”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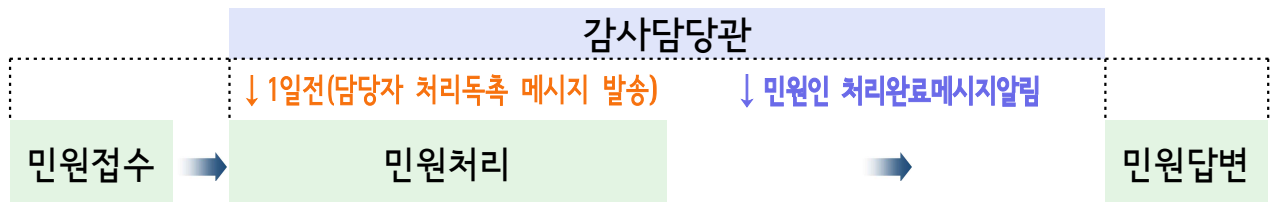
감사담당관(2094-0233)

추진 개요

- 대상민원 : 고충민원 및 인터넷민원, 전화·방문민원 등

구 분	민원처리 예고알림	민원처리 결과알림
추진목적	담당자 민원지연처리 예방	처리즉시 통보로 궁금증 해소
발송대상	민원담당부서 팀장 및 담당자	민원인
발송시점	민원처리기한 1일전	민원처리 내부답변 완료 후
발송내용	민원처리 독촉예고	민원처리내용 우편발송 전 처리결과여부 1차 알림
발송방법	핸디메일 발송	문자발송

절 차



기대 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민원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메시지 발송으로 민원 지연처리 사전예방

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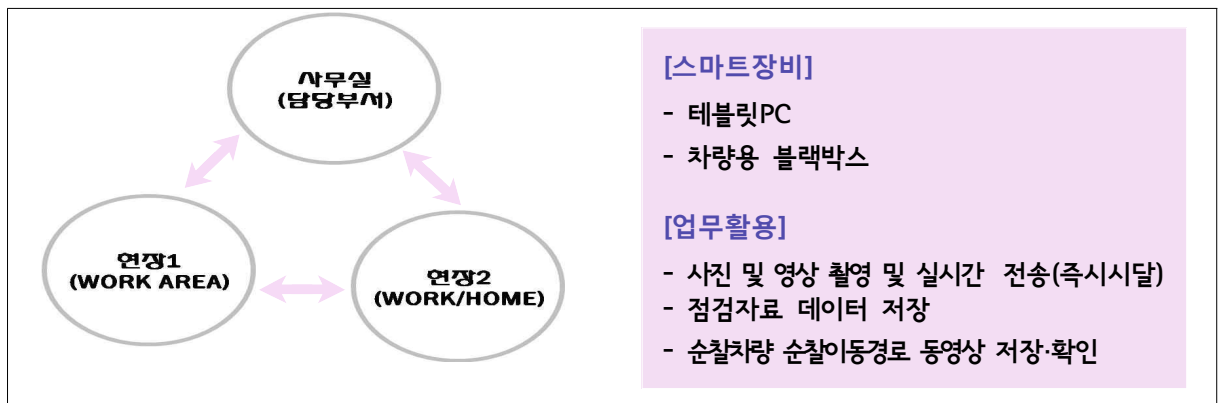
- 2012. 1월부터

04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감사담당관(2094-0223)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활용업무 : 120시민불편살피미 현장점검, 현장민원조사, 긴급사항 발생 시
- 추진방법
 - 기존 점검자료(종이출력문서), 사진촬영, 파일전송 기능을 테블릿PC로 통합
 - 긴급사항 발생 시 현장보고 시스템 구축
 - 순찰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짧은시간 많은 현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활용 ⇨ 테블릿PC,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
- 업무 프로세스



기대 효과

- 현장민원 점검 시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민원 관리
-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효율적이고 생동감 있는 순찰시스템 구축

시행일

- 2012. 1월부터

05

동주민센터 목요 야간민원 예약제 시행

자치행정과(2094-0426)

추진 개요

- 대상사업 : 동 주민센터 목요야간민원 예약제 시행
- 추진내용
 - 운영요일 : 둘째, 넷째 목요일 (21시 이전)
 - 반드시 사전예약 필요(예약이 없는 경우 야간민원 미시행)
 - 취급업무
 - 주민등록 신고(전입신고, 정정신고 등)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및 교부

기대 효과

- 방문민원이 없는 날에도 무조건 21시까지 담당자가 대기하는 비효율적 운영방식 개선으로 비용절약

시행 일

- 2012. 1월부터

06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전산정보과(2094-0583)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12. 3월 ~ 12월
- 사업내용
 - 개인정보 파일관리시스템 구축
 - PC내 방치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필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
 - 중앙에서 일괄점검 및 사용자 자율점검으로 개인정보 인식 제고 및 정보유출 사전예방
 - USB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도입
 - 수기로 관리되는 관리대장을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 등록된 보조기억매체만 사용을 허용하는 등 사용 통제 및 분실 시 추적성 확보

기대 효과

-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 보호체계 관리시스템 도입
- 보조기억매체 분실 및 오남용으로 인한 행정정보유출 예방

시행일

- 2012. 3월부터

07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전산정보과(2094-0582)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12. 1월 ~ 12월
- 구축장소 : 구청 2층 (232㎡/70평)
- 사업내용
 - 7개부서 396대 CCTV 및 상황실 통합
 - 통합관제시스템, 통합제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GIS)개발
 - 정보통신보안(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및 출입자관리 시스템 구축
 - A/S시스템, 인테리어 및 부속설비 (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공사

기대 효과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부서별로 운영 중인 CCTV 상황실의 통합으로 효율적인 운영 · 관리

완공 일

- 2012. 11월부터

08 야간 민원실 운영

민원여권과(2094-0601~3)

추진 개요

-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 (18:00~20:00)
 - ※ 2011.1.1일부터 시행중인 야간 여권업무 운영시간과 동일
- 대상민원 : 4개 사무
 - 기존처리사무 : 여권 접수·교부
 - 추가사무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교부
- 근무인원 : 3명
 - 여권 접수·교부 : 2명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교부 : 1명

기대 효과

- 일과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의 민원편의 증진
- 기시행중인 야간 여권업무와 병행하여 기본민원업무도 추가·제공하여 고객감동서비스 실현

시행일

- 2012. 1월부터

09 일부사항증명서 발급

민원여권과(2094-0602)

추진 개요

- 주요내용 : 일부사항증명서의 발급
 - 과거의 신분관계나 정정이력 등이 제한 없이 나타나는 증명방식에서 사생활 침해요소가 있는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등록사항별증명서를 작성 발급
- 나타나지 않는 기록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 기본증명서 : 기아발견, 인지, 친권·후견 종료, 실종선고취소, 국적취득,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취소, 이혼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취소, 파양

기대 효과

- 국민의 사생활 보호

시행일

- 2012. 1월부터

10 등기우편을 통한 여권 교부

민원여권과(2094-0603)

추진 개요

- 배송기관 : 중량우체국
- 교부방법 : 우편 교부 (맞춤형 계약등기 - 1건 3,000원, 착불)
- 사업비 : 비예산

기대 효과

-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시행일

- 2012. 1월부터

11 주소 일괄 변경 제도 시행

부동산정보과(2094-1465)

추진 개요

- 신청요건 :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점유로 인해 주소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시장 등에게 각종 문서상 주소변경을 신청
- 대상공부 : 주민등록·사업자등록·건설기계등록·옥외광고물등록(4종)

기대 효과

-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소를 일괄 변경하여 민원편의 제공

시행 일

- 2012. 1월부터

Chapter

02

경제분야

- 01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02 주택 거래세 감면제도 개편
- 03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규정 신설 강화
- 04 세무민원 사후관리제 시행
- 05 차상위 계층 LPG가스시설 개선 지원
- 06 찾아가는 가스 안전교실

01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1과(2094-1310~6), 세무2과(2094-1400~4)

추진 개요

- 달라지는 내용
 - 기존에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였으나,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은행현금인출기(CD/ATM), ARS자동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음
- 주요 납부 방법

종 류	방 법
인터넷	▶ 서울시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
은행현금인출기(CD/ATM)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ARS자동납부시스템	▶ 1599-3900 : 자동납부전용 전화 운영 ▶ 3151-3900 : 상담전용 전화 운영
자동이체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자동이체 신청 후 납부 가능
스마트폰 세금납부 서비스 (서울시 S-Tax)	▶ “애플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검색 후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설치 ▶ 신용카드 및 우리은행 계좌이체로 납부

기대 효과

- 고지서가 없이도 다양한 온라인 방식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 활용을 어려워하는 고객층도 ARS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고객 납세편의 증진에 기여

시행 일

- 2012. 1월부터

02 주택 거래세 감면제도 개편

세무1과(2094-1310~6)

추진 개요

- 2011년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이후 주택유상거래에 대해 최고 취득세 75%까지 감면(4%⇒1%)해 주던 제도가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
- 2012년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포함)' 주택유상거래취득의 경우, 주택거래세 50%감면(4%⇒2%)으로 축소,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 주요 개편 내용

구 분	기 존		개 편	
감면시한	2011.3.22 ~ 2011.12.31		2012.1.1 ~ 2012.12.31	
감면주택	모든 유상거래 주택		9억원 이하 1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하는 경우 ※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적용세율	9억원 이하, 1주택	1%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다주택	2%	9억원 초과, 다주택	4%

※ 2012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요약

구 분		합 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9억원 이하, 1주택	85㎡ 이하	2.2%	2.0%	0.2%	비과세
	85㎡ 초과	2.7%	2.0%	0.2%	0.5%
9억원 초과, 다주택	85㎡ 이하	4.4%	4.0%	0.4%	비과세
	85㎡ 초과	4.6%	4.0%	0.4%	0.2%

기대 효과

-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

시행 일

- 2012. 1월부터

03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규정 신설 강화

세무1과(2094-1310~6), 세무2과(2094-1400~4)

추진 개요

- 지방세 체납처분 면탈행위, 지방세 관련 장부의 소각·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명의대여 행위 등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강화
- 주요 개편 내용

구 성 요 건	형 량
지방세 체납처분 면탈 행위 (재산은닉, 탈루, 거짓계약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장부의 소각·파기·은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성실신고 방해 행위 (거짓 신고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한 명의대여 행위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금품공여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내의 과태료
명령사항 위반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명령위반, 질문에 대한 거짓진술·거부 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대 효과

- 성실납세에 반하는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공정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적정절차의 원리를 충실하게 구현하고,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시행일

- 2012. 1월부터

04 세무민원 사후관리제 시행

세무1과(2094-1322)

추진 개요

- 조사기간 : 분기별 조사(연4회)
- 조사대상 : 세무분야 민원처리 경험자(개인, 법인, 법무사)
- 조사자 : 재산1·2팀장, 법인관리팀장
- 대상업무 : 부동산 취득세신고 및 감면신고(개인 및 법인)
- 조사방법 : 설문지에 의한 전화설문조사
- 모집단 추출 : 분기별 세무민원 서비스를 받은 고객
- 설문조사
 - 기간 : 매분기 익월(4월, 7월, 10월, 2013. 1월)
 - 대상 : 개인납세자, 법인납세자, 법무사(대행자)
- 조사결과처리 : 조사결과를 분석 → 업무 프로세서에 적용(제도개선 등)

기대 효과

- 세무고객의 체감적 청렴도 및 친절도 파악이 가능하며 고객의 관점에 맞춘 세무행정시스템 구축 가능

시행일

- 2012. 4월부터

05 차상위 계층 LPG가스시설 개선 지원

지역경제과(2094-1295)

추진 개요

- 추진방법 : 정부와 지자체 예산 50:50 매칭방식으로 지원
 - ※ 사업근거 : 2012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예산(안)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팀-531(2011.09.07)]
- 사업대상 : 관내 차상위계층 LPG가스사용 40가구
- 사업내용
 -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등 시설 개선사업
 -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

기대 효과

-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차상위 계층의 LPG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차상위 계층 생활안정에 기여

시행 일

- 2012. 하반기부터

06 찾아가는 가스 안전교실

지역경제과(2094-1293)

추진 개요

- 추진대상 : 경로당 119개소(구립 40, 사립 79)
- 가스안전교실 운영
 - 유관기관(예스코)과 합동으로 관내 경노당을 방문하여 가스안전 사용요령 교육 실시 및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안전관리와 안전점검 요령 시연
-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 가스기기 연결부 가스누출 여부와 가스보일러 등 적정관리 여부 점검
- 가스안전점검 결과 조치
 - 현장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지 시정
 - 가스누출 우려와 시설부적합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

기대 효과

- 가스 안전사용과 시설관리가 취약한 경노당의 가스사용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인 사전제거

시행 일

- 2012. 4월부터

Chapter

03

복지·교육분야

- 01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례관리 활동모임” 발간
- 02 글로벌 중랑자원봉사 NGO와 함께하는 신생아 살리기
- 0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 04 중랑숲 어린이 도서관정보센터 운영
- 05 중랑교육홈페이지(JUMP중랑) 운영
- 06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시행
- 07 중랑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맘 나눔터> 개설

01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례관리 활동모임” 발간

주민생활지원과(2094-1633)

추진개요

- 발간내용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내용 및 문제해결사례 홍보
 -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사례홍보
 - 사례관리사업의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안내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활동내용

기대효과

- 위기를 해결하고 자립의지로 평범한 일상생활의 주인이 되어 생활하는 사례를 모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례관리의 사업홍보 및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정보를 제공

시행일

- 2012. 하반기

02 글로벌 중량자원봉사 NGO와 함께하는 신생아 살리기

주민생활지원과(2094-1615)

추진 개요

● 사업내용

- 지역사회로 국한된 자원봉사를 세계화에 발맞춘 중량자원봉사로 확대 시켜나가고자 청소년 및 가족봉사자를 모집하여 직접 신생아 살리기를 위한 털모자 등 용품을 제작하여 국제NGO(비정부기구)를 통해 저개발 국가 신생아들에게 전달

● 추진방법

-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자원봉사자캠프를 갖춘 5개 학교와 연계 실시
- 아파트 내 가족봉사단 모집을 통한 연계 실시

● 제작물량 : 300개

● 수혜대상 :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저개발 국가 신생아

● 전달방법 : 국제NGO(비정부기구)로 접수 및 전달

기대 효과

- 지역사회의 봉사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세계 속의 중량자원봉사로 확대
- 태어나자마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저개발 제3세계 국가 신생아들에게 체온을 유지시켜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음

시행일

- 2012. 2분기부터

0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사회복지과(2094-1681)

추진 개요

- 사업대상 : 만6세 이상 ~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450명
만6세 이상 ~ 65세 미만의 2·3급 장애인 14명
- 선정기준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 후, 수급자격 심의를 통해 활동지원 등급 결정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독거장애인 우선)
- 지원금액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차등지원 (350천원~860천원)
 - 추가급여 : 활동지원수급자에 대해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 환경에 따라 추가지원 (83천원~664천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사업기관 : 원광장애인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중랑자립생활센터

기대 효과

-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사업을 통하여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시행 일

- 2011. 10월부터

04 중랑숲 어린이 도서관정보센터 운영

문화체육과(2094-1843)

추진개요

- 사업내용 : 중랑숲 어린이 도서관정보센터 운영비 등 지원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월 ~ 금요일(09:00 ~ 18:00), 토요일(09:00~17:00)
 - 근무인원 : 8명(정규직 6명, 비정규직 2명)
 - 운영방법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기대효과

- 문화·교육 공간인 중랑숲 어린이 도서관 정보센터 개관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제공

개관일

- 2012. 5월부터

05 중랑교육홈페이지(JUMP중랑) 운영

교육지원과(2094-1893)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중랑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포털 홈페이지를 운영
 - 다양하고 유용한 교육정보를 수집하고 구민들에게 제공
 -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 마련
- 중랑교육홈페이지 주소 : <http://jump.jungnang.seoul.kr/>

기대효과

-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사업 안내
- 구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공유함으로써 지역교육발전의 공감대 형성
- 소통과 협력의 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역교육발전 도모

시행일

- 2012. 1월부터

06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시행

교육지원과(2094-1912)

추진 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 지원일수 : 약 180일
- 재원분담 : 교육청(50%), 서울시(30%), 자치구(20%)

기대 효과

- 친환경 직거래를 통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농축산물의 사용으로 급식 신뢰도 제고
- 표준식단 및 계약재배, 식자재 유통망 구축 등에 따른 비용절감 및 재정 효율성 강화
- 학부모 교육비 경감,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

시행 일

- 2012. 1월부터

07 중랑구 평생학습센터홈페이지 〈맘 나눔터〉 개설

교육지원과(2094-1915)

추진 개요

- 운영방법 : 중랑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내 <맘 나눔터> 메뉴 추가
- 이용대상 : 중랑구민 중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
- 운영내용
 - 관내 평생학습 사업내용(중랑 평생교육아카데미 및 기타사업) 홍보
 - 구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관련 의견작성
(칭찬 및 불만사항, 새로운 사업 제안 등)

기대 효과

-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및 생각을 수렴하여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의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개발에 기여

시행일

- 2012. 3월부터

Chapter

04

디자인·건축분야

- 01 공공디자인 개선 현장 견학프로그램 운영
- 02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연장 신청 온라인 및 우편 접수 실시
- 03 건축허가표지판 및 가림막 효율적 설치 운용
- 04 신축건축물 차수판(막) 설치 의무화 사업
- 05 신축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소 설치 사업

01 공공디자인 개선 현장 견학프로그램 운영

도시디자인과(2094-2242)

추진 개요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초·중·고생
- 사업내용
 - 디자인개선 전·후(ppt 파일) 현황 설명
 - 공공장소 디자인 개선 현장 견학(망우 디자인 서울거리 등)
 -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낙서 제거 등 봉사활동 병행
 - 향후 디자인개선 방향 참고자료 활용을 위한 설문조사
- 추진방법
 - 구 홈페이지 사업 홍보
 - 견학 희망자 접수(자원봉사센터 및 도시디자인과)
 - 분기별 2회 견학 실시(봉사활동시간 부여)

기대 효과

- 관내 거주 초·중고생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개선 현장 견학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디자인의식과 안목을 고취하고 내고장 중량에 대한 애향심 함양

시행일

- 2012. 3월부터

02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연장 신청 온라인 및 우편 접수 실시

도시디자인과(2094-2253)

추진 개요

- 만료기간이 도래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표시기간 연장 시 온라인 및 우편 신청 접수
 - 온라인 접수 : 「민원24」 신청
 - 우편 접수 : 신청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수수료는 부서계좌로 송금

기대 효과

- 방문 없이 민원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 편의 제고

시행 일

- 2012. 1월부터

03 건축허가표지판 및 가림막 효율적 설치 운용

건축과(2094-2292)

추진 개요

- 사업내용
 - 건축공사장 가림막을 E.G.I웬스로 견고히 설치하고 주도로 가림막 전면에 허가표지판을 공사기간 중 부착토록 행정지도
 - 착공신고 시 가림막(E.G.I 웬스) 및 허가표지판을 설치하고 원경 및 근경사진을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으로 부여
- 사업대상
 - 가림막 설치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시공현장
 - 허가표지판 설치대상 - 건축허가현장

기대 효과

- 허가표지판을 주도로 가림막 전면에 설치함으로써 건축관계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현장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해결이 가능

시행일

- 2012. 1월부터

04 신축건축물 차수판(막) 설치 의무화 사업

건축과(2094-2280)

추진 개요

- 사업대상 : 지하층을 설치하는 모든 신축 건축물(공공·민간 건축물)
- 사업내용
 - 우기 시 국지성 기습폭우로 인한 건축물(지하실) 침수 등에 따른 재산 및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유입을 차단 및 지연시키는 차수판(자동식 또는 수동식)을 설치
 - 지하주차장, 썬큰, 지하계단 출입구 등 차수판 설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
- 추진방법 : 건축허가 시 차수판 설치계획서 제출 후 사용승인 시 설치확인서 제출

기대 효과

- 빗물의 건축물 유입 차단 또는 지연으로 건축물 침수방지
- 적은 설치비용으로 과도한 재산피해 예방 가능
- 재해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구현

시행일

- 2012. 1월부터

■ 썬큰이란? : '옴폭 들어간, 가라앉은'의 뜻,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

05 신축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소 설치 사업

건축과(2094-2280)

추진 개요

- 사업내용
 - 1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음식물쓰레기 보관장소 구획 (폭 1m×길이 2m 이상, 급·배수시설 설치) 및 보관함 설치
- 추진방법 : 건축허가 시 설치 계획서 제출 후 사용승인 시
감리자 설치 확인서 제출

기대 효과

-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처리 시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설치현황을 확인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의 증대
- 아름답고 쾌적한 중랑구의 주거환경 조성

시행 일

- 2012. 1월부터

Chapter
05

환경·교통분야

- 01 중화동 274-71번지일대 봉화산 주민휴식공간 조성
- 02 숲 체험장 및 아토피 치유의 숲 조성사업
- 03 여객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 실시
- 04 무인단속 CCTV 카메라 추가 설치 운영

01 중화동 274-71번지일대 봉화산 주민휴식공간 조성

공원녹지과(2094-2362)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6월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274-71번지(봉화산근린공원)
- 사업내용
 - 봉화산근린공원(중화동지역)내 주택가와 접하여 공지로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공간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목류 식재, 배수로 정비 등 녹지 공간을 새로이 조성

기대 효과

- 도시미관 향상 및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

완공 일

- 2012. 하반기

02 숲 체험장 및 아토피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원녹지과(2094-2382)

추진 개요

- 위치 : 중랑구 면목동 31-25번지 일대
- 규모 : 19,602m²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2. 10월
-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숲(생태)체험장 및 아토피 치유의 숲으로 복원
 - 토지보상, 배수로, 산책로, 휴양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

기대 효과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산림복원 및 수해 등 재해예방
-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및 자연환경 제공
-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체험을 통해 숲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열린 공간 제공

완공 일

- 2012. 10월(예정)

03 여객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 실시

교통행정과(2094-2583)

추진 개요

- 점검기간 : 연2회 (상 · 하반기)
- 점검대상 : 31개 업체 5,739대
(개인택시, 법인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 점검내용
 - 여객자동차 청결관리상태 및 시설물관리 실태
 - 운수종사자 교육여부 및 경영관리실태
 - 운행시간 준수 및 운송약관 이행여부
- 점검방법
 - 업체별 현장 방문하여 전수점검
 - 점검 불응업체 및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기대 효과

- 여객자동차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차량환경 유지
- 여객운송질서 확립 및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시행 일

- 2012. 상반기 중

04 무인단속 CCTV 카메라 추가 설치 운영

교통지도과(2094-2633)

추진 개요

-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현황
 - 설치지역 :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정체지역 21개소
 - 운영인력 : 직원 2명, 공익 1명
- 추가설치 지역 : 망우로 코스트코 및 묵동 GS자이아파트 주변
- 설치사유 : 상습정체 및 민원다발지역으로 인력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한 지속 단속 및 사전 예방 실시
- 운영시간 : 민원 및 정체현상이 공휴일에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24시간 단속
- 설치시기 : 2012. 2월 ~ 6월

기대 효과

- 불법주정차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무인단속 CCTV 카메라를 추가 설치·운영하여 불법주정차 사전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통행로 확보

시행 일

- 2012. 하반기부터

Chapter
06

보건·건강분야

- 01 튀김접객업소 식용유지 품질개선을 위한 지도
- 02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실시
- 03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 04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 05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 06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0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08 의료급여수급자 국가 검진사업 실시

01 튀김접객업소 식용유지 품질개선을 위한 지도

보건위생과(2094-0804)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대상업소 : 식용유지 취급음식점 352개소
(배달·중식음식점 및 치킨, 튀김류 판매점)
- 추진내용
 - 방 법 : 현장에서 측정기(Testo270) 활용하여 조리예 사용 중인 식용유지의 품질측정
 - 점 검 반 : 2인 1조
 - 조치사항 : 기준치 초과업소에 대하여 현장에서 식용유지 교체 등 행정지도

기대 효과

- 오래된 식용유지의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및 식품수준 향상에 기여

시행일

- 2012. 1분기 중

02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실시

보건위생과(2094-0794)

추진 개요

- 음식점에서 수산물 6종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2012. 4. 11일부터)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를 조리·판매하는 경우 음식점내 메뉴판 및 게시판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
 -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품목

기존	개정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찌개용, 탕용)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기대 효과

-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시행일

- 2012. 4월부터

03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보건지도과(2094-0835)

추진 개요

- 백신비 지원(본인부담금 30%) → 백신비+행위수수료(본인부담금 100%)
- 지원되는 항목(10종)
 - : DTaP, IPV, MMR, BCG(피내용), 간염,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DTaP-IPV, TDap

기대 효과

-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임
- 저출산 시대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으로 출산 · 양육환경조성

시행일

- 2012. 1월부터

04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보건지도과(2094-0835)

추진 개요

- 예방접종 확인 항목 추가
 - 4종[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사4차 또는 생3차)]
→ 접종내역이 확인 되는 경우 증명서 제출 불필요
- 기존 입학대상자 모두가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현재는 전산 미등록자에 한해서 증명서 제출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가입 후
 - “예방접종내역조회”(보호자) → 4종 접종 완료시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 미접종 항목 있을 경우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후 등록 요청
-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로 제출

기대 효과

- 취학아동 예방접종확인사업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본인의 건강 및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아동들의 건강 유지

시행 일

- 2012. 1월부터

05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

보건지도과(2094-0835)

추진 개요

- 사업대상 : 만 12 ~ 36개월 이하 유아 990명
 -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 장애아 및 장애인 자녀, 쌍둥이, 3자녀 이상,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아동
- 접종방법
 - 12개월 이상 유아 1차 접종, 12개월 경과 후 추가접종(총2회)
 - 별도 신청 없이 보건소 방문 무료 접종

기대 효과

- 저출산 시대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으로 출산·양육환경 조성
- 국가차원의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정책 조기 도입추진 유도
- A형간염 환자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서울시 위상 제고

시행일

- 2012. 1월부터

06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지도과(2094-0834)

추진 개요

- 지원대상 : '임신헌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8세 이하 산모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임신1회당 120만원이내 (1일 1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기대 효과

- 청소년 임신부의 적절한 산전관리를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 도모

시행일

- 2012. 1월부터

0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보건지도과(2094-0833)

추진 개요

- 기 간 : 연 중
- 사업내용
 - 이주여성건강관리 및 산모건강관리
 - 예방접종 등 영유아 건강관리
 - 다문화가족 봉사단원(로하스) 양성 : 다문화가족에게 멘토-멘티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교육
 - 결혼이민자 보건소 Tour 및 보건교육

기대 효과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다문화 이주여성에게 체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건강 관리 향상에 도모

시행일

- 2012. 1분기 중

08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건강검진사업 실시

의약과(2094-0912)

추진 개요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19~39세 세대주, 41~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검진수행 : 관내 국가검진 기관, 보건소
- 검진항목 : 기본검사 및 상담(신체계측, 혈압, 청력, 시력), 구강검사, 흉부X-선검사, 소변검사, 혈액학적검사, 생화학검사
- 수검대상자 현황

예상수검자	대 상 인 구		
	합계	19 ~ 39세	41 ~ 64세
731	4,503	661	3,842

* 수검예상률 산출 기초 : 대상인구 50%의 32.5%

※ 생애전환기 검진(40세, 66세)은 기존대로 추진

기대 효과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시행 일

- 2012. 1월부터

서울시 달라지는 제도

여성·복지·건강분야	52
교육·문화분야	63
경제분야	70
주택·환경분야	76
교통·안전분야	87
시민참여분야	100

여성·복지·건강분야

차 례

- 01_ 5세누리과정 운영(5세 무상보육 실시)
- 02_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03_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 04_ 서울 해비치 다문화가족교육센터 설치·운영
- 05_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 06_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 07_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운영
- 08_ 어르신 무료 안마서비스 확대
- 09_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을 시행
- 10_ 야외 금연구역 확대 시행

1 5세 누리과정 운영

◆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로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매년 1.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하는 어린이
-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 보육료 전액 지원
- ◆ 지원방법 : 어린이집에 만 5세아 1명 당 27만원 지원
(보육료 20만원, 담당교사 인건비 등 7만원)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보육료 지원(만5세)	소득하위 70%	모든 계층

기대 효과

- ◆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행일

2012. 3월부터

- 5세 누리과정이란?
 -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만5세아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하는 보육교육과정(프로그램)
- 5세 누리과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보육담당관(3707-9262)

2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지원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역량 강화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
- ◆ 지원내용 : 생계비, 아동양육비, 교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등 지원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지원대상	장자기준 자녀연령이 18세(취학 시 22세)를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	장자기준 자녀연령이 18세(취학 시 22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자녀들이 연령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보호대상에 포함토록 변경
지원내용	- 학용품비 : 중고생 자녀 연 42,000원 - 양 육 비 : 50,000원/월 지원	- 학용품비 : 중고생 자녀 연 50,000원 - 양 육 비 : 기존 양육비 이외에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모부 가족 50,000원/월 추가 지원

기대 효과

- ◆ 한부모가족 양육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시행 일

2012. 1월부터

저출산대책담당관(6321-4358)

3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 ◆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 및 과도한 근무시간 경감을 위하여 비담임 보육교사제 신설 등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 ◆ 지원내용 :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 지급, 비담임 보육교사 신설 및 대체교사 지원 등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근무환경 개 선 비	-	■ 월 50천원
비담임 보육교사	■ 40인 이상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 40인 미만 서울형어린이집(추가)
대체교사	■ 어린이집 채용(1일 35천원, 5,539명) ■ 보육정보센터(72명)	■ 어린이집 채용(1일 50천원, 6,539명) ■ 보육정보센터(202명)

기대 효과

-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한단계 높은 보육서비스 제고

시행 일

2012. 1월부터

보육담당관(3707-9262)

4 서울 해비치 다문화가족교육센터 설치·운영

- ◆ 급증하는 이민자, 다문화자녀의 조기 생활정착 지원 및 중도 입국 자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신설

사업 개요

- ◆ 위 치 : 서울의료원 삼성동 분원 3층(강남구 삼성동 소재)
- ◆ 지원대상 : 이민자,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 360명
- ◆ 주요내용 : 총 9개 과정 26개반
 - 중도입국/학교이탈 자녀 특화교육 : 한국어, 고입검정고시, 컴퓨터, 한국사회적응
 - 다문화가족 자녀 : 이중언어교육(중국어·영어), 특기적성교육
 - 결혼이민자 프로그램 : 취업교육, 한국어 교육, 자격증교육(운전면허컴퓨터)
- ◆ 운영방법 : 市 장소제공, 해비치재단에서 운영비 및 시설비 부담 및 (사)한국다문화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달라지는 내용

신규사업

기대 효과

- ◆ 이민자의 조기생활 정착으로 사회적·경제적 자립능력 강화
- ◆ 중도입국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지원으로 교육사각지대 해소

개 관 일

2012. 1월 개관

저출산대책담당관(6321-4355)

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 ◆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상수도 요금을 대폭 감면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세대
- ◆ 추진내용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확대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상수도요금 감면액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세대당 상수도 기본요금의 50% (540원/월)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세대당 상수도 월사용량 10㎥ (3,600원/월) 감면
물이용부담금 감면액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세대당 월사용량 10%(월 24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세대당 월 사용량 10㎥(월 1,700원) 감면

기대 효과

- ◆ 수도요금 감면 확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시행 일

2012. 3월부터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지원과(3146-1191)

6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 ◆ 장애인 일자리 관련기관을 연계하여 일자리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구직의사가 있는 장애인 213천명 (2010년 서울시 등록 장애인)
- ◆ 지원내용 : 장애인 일자리 통합 지원센터 운영
 - 취업연계, 기업체 발굴, 사전훈련, 취업지원, 사후지도 등 취업토털 서비스 제공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 상담 실시, 중증장애인의 장기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중증장애학생 인턴십 확대	120명	240명
취업 전 현장훈련	500명	600명
중증장애학생 인턴십 확대	120명	240명

기대 효과

- ◆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알선·사후관리를 통해 체계적 취업활동 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도모

시행일

2012. 1월부터

장애인복지과(3707-8357)

7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운영

- ◆ 시립승화원 외에 서울추모공원을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증가하는 서울시민의 화장 수요 충족 및 이용편의를 증진

사업 개요

- ◆ 위치 : 서초구 원지동 68번지 일대
- ◆ 규모 : 화장장(36,453㎡), 진출입도로(6,971㎡), 공원(56,336㎡)
- ◆ 이용대상 : 전 국민(제한없음)
- ◆ 이용요금 (단위 :원)

구 분	대 인	소 인	사산아	개장유골
관 내	90,000	80,000	36,000	47,000
관 외	700,000	300,000	150,000	300,000

※ 대·소인 구별 : (대인) 서울시 만13세 이상, 타 지역 만15세 이상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화장시설	■ 1개소(시립승화원)	■ 2개소(서울추모공원, 시립승화원)
운영방법	■ 서울시민 12:00이전 시간 우선예약권 (타시도 주민은 12:00이전 화장 예약불가)	■ 13:00이전 시간 우선예약권 부여 (타시도 주민은 13:00이전 화장 예약불가)

※ 경기도 고양시민·파주시민은 서울시민과 같은 조건 부여

기대 효과

- ◆ 2025년까지의 서울시민 화장수요 완전 충족(1일 170구 화장가능)

시행일

2012. 1월부터

노인복지과(3707-9219)

8 어르신 무료 안마서비스 확대

- ◆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장 기반을 조성하고, 어르신에게는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생활 지원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노인복지시설(복지관, 경로당 등) 이용 어르신
- ◆ 지원방법
 -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88명 채용
 -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 무료제공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장애인 안마사 63명 채용 ■ 4개 권역별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무료안마서비스 제공	■ 장애인 안마사 88명 채용 ■ 기존 순회방문서비스와 함께 25개 자치구 노인복지관에 시각 장애인 안마사 1명을 상시 배치

기대 효과

- ◆ 어르신의 건강생활 도모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

시행 일

2012. 1월부터



장애인복지과(3707-8483)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 노숙인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지원하고자 법률을 제정·시행

입 법 내 용

- ◆ ‘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5년마다),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여 노숙인 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
- ◆ 노숙인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과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및 노숙인 유기·방임 등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등 노숙인 인권 강화

기 대 효 과

- ◆ 노숙인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 ◆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시 행 일 2012. 6월부터

- 노숙인 등이란 ?
 - ▶ 노숙인 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이란?
 - ▶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함
 - ▶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류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등

자활지원과(6360-4544)

10 야외 금연구역 확대 시행

◆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사업 개요

◆ 추진현황

〈서울시 단계별 금연구역 확대 계획〉

- 1단계(2011년) :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장소 우선 실시

2011. 3. 1	2011. 9. 1	2011. 12. 1
금연광장 3개소 (서울청계광화문광장)	서울시 관리 도시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개소

- 2단계(2012년 이후) : 자치구 조례 제정 후 관할구역에 대해 시행
 - ▶ 2012년 도시공원(1,910) ⇒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5,715) ⇒ 2014년 학교정화구역(1,305)
 - ※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간의 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실시

◆ 위반시 조치 : 과태료 10만원 부과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광장, 주요공원(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 지정·운영	■ 도시공원 (1,910개소)이 금연구역 추가 지정

기대 효과

- ◆ 야외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
- ◆ 공공장소 금연문화 정착에 기여

시행 일

2012. 6월부터

건강증진과(6321-4313)

교육·문화분야

차 례

- 01_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
- 02_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03_ 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원
- 04_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05_ 건축물 신·증축 시 미술작품 설치의무 완화
- 06_ 서울시향의 우리동네 음악회 - 마티네 콘서트

1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

- ◆ 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국가적 인재양성과 과도한 등록금 인상억제 및 인하를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생(1~4학년, 일부학과 5학년)
- ◆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1/2로 감액

※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2011	2,228	184	404	1,640
2012	1,114	92	202	820

달라지는 내용

신규사업

기대 효과

- ◆ 학부모 및 학생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 경감
- ◆ 우수한 인재 유치와 국가 인재양성에 기여
- ◆ 타 대학의 등록금 인상억제 및 인하를 유도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시행 일

2012. 1월부터

서울시립대 총무과(2210-5100)

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하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재학 중 경제적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서울소재 고교 졸업 후 대학 재학생
(신청일 현재 2년간 시에 주소를 둔 자)
※ 소득기준 : 수급자, 소득 1~7분위까지 차등지급
- ◆ 지원기간 : 대학교 재학 중(휴학 및 졸업 이후 제외)
- ◆ 지원방법 : 대학생 대출 원리금 상환계좌로 입금
※ 정부(교과부)가 매 학기마다 결정하는 금리로 지원
- ◆ 지원일정
 - 2012. 1월 : 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 2012. 2월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12. 4~6월, 8~10월 : 지원신청 접수
 - 2012. 7월, 10월, 12월 : 이자지원 실행 및 정산

달라지는 내용

신규사업

기대 효과

- ◆ 서울지역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시행일

2012. 1월부터

교육격차해소과(2171-2996)

3 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원

- ◆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공교육 역할 강화 및 사교육 부담 경감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초·중·고 599개교
- ◆ 지원내용 : 1교당 10백만원
 - 특기적성·수준별 강좌, 주말·방학중 프로그램 등 강좌 개설을 위한 방과후학교 강사료 보전
- ◆ 지원기준 : 학교별 저소득층 학생 비율, 지역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등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위주	■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지원

기대 효과

- ◆ 특기·적성 강좌나 수준별 강좌 및 토요 강좌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로 학생참여 증가 및 만족도 향상

시행 일

2012. 3월부터

교육격차해소과(2171-2988)

4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 이용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 운영내용
 - 평생학습종합정보 포털 구축
 - 공공기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정보 통합제공
 -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운영
 - 시민제안, 재능나눔, 재능기부, 트위터
 - 사이버학습강좌 시범운영
 - 자격증, 취업관련, 인문학, 어학 등



달라지는 내용 **신규사업**

기대 효과

-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 스스로 학습을 즐기고, 교류하며, 활동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
- 평생학습정보 사이버강좌 운영으로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

시행일 2012. 1월부터

평생교육과(2171-2429)

5 건축물 신·증축 시 미술작품 설치의무 완화

- ◆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주의 미술장식품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미술장식제도 개선

사업 개요

- ◆ 사업대상 :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 건축주
- ◆ 추진내용 : 건축주는 건축법상 기존의 미술작품 설치 의무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도 출연 가능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시설별로 건축비용의 0.1~0.7%)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	■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시설별로 건축비용의 0.1~0.7%)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 또는 <u>기존의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한 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도 출연 가능</u>

기대 효과

- ◆ 건축주의 법적 의무를 완화하면서도 예술의 사회문화적인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시행일

2011. 11월부터

디자인기획과(6361-3413)

6 서울시향의 우리동네 음악회 - 마티네 콘서트

- ◆ 서울시향의 다양한 계층을 위한 클래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부를 위한 '마티네 콘서트'를 신설하여 여성이 행복한 서울 실현

사업 개요

- ◆ 대 상 : 일반 주부
- ◆ 장 소 : 각 자치구 문예회관 등
- ◆ 사업내용 :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공연 시행 (10회)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병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찾아가는 '우리동네 실내악' ■ 영유아 대상 '우리아이 첫 콘서트' ■ 직장인 대상 '오박사의 재미있는 클래식'	■ 기존 프로그램의 지속과 함께 주부 대상 '마티네 콘서트' 추가 신설

기대 효과

- ◆ 정규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주부들에게 오전시간(11:00~12:00예정)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시행 일

2012. 3월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3700-6355)

경제분야

차 례

- 01_가계부채 금융·재무상담 서비스 확대
- 02_상수도 요금 인상
- 03_하수도 요금 인상
- 04_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변경
- 05_사회적기업 세제지원 신설

Ⅲ 경제분야

1 가계부채 금융·재무상담 서비스 확대

- ◆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고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저소득가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라이프-코칭(Life Coaching) 개념의 전문적인 금융·재무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 개요

- ◆ 위 치 : 서울시 재무상담센터 17개소(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내)
- ◆ 사업대상 : 저소득가구, 자영업자, 소상공인
- ◆ 사업내용 : 금융·재무 컨설팅 전문가를 배치(센터별 1명)하여 상시 상담서비스 제공

달라지는 내용

현 행	변 경
■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가입자 중 희망자, 장애인 자립생활입주자, 자활 사업 참여자 등 저소득 가구에 한해서 서비스 제공	■ 재무상담센터 17개소를 설치하여 상시 금융·재무컨설팅이 가능하고, 저소득가구는 심층 방문상담을 통하여 편안한 시간대에 상담이 가능함

기대 효과

- ◆ 가구별 금융·재무 형편에 맞는 맞춤형 금융, 복지 서비스 매칭 가능
-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금융·재무 상담을 통하여 건전 가계 경제육성

시행일

2012. 3월부터

창업소상공인과(6321-4020)

2 상수도 요금 인상

- ◆ 2001년 이후 10년간 요금 동결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어려운 수도사업의 재정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사업 개요

- ◆ 인상내용 : 평균 9.6% 인상 (514.16원/㎥ → 563.72원/㎥)
- ◆ 급수업종 명칭 변경 :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달라지는 내용

현 행	변 경
■ 급수업종별 평균 상수도요금(1㎥당) ▶ 가정용 : 369.68원 ▶ 업무용 : 655.86원 ▶ 영업용 : 966.22원 ▶ 대중목욕탕용 : 369.93원	■ 급수업종별 평균 상수도요금(1㎥당) ▶ 가정용 : 403.23원 ▶ 공공용(종전 업무용) : 787.00원 ▶ 일반용(종전 영업용) : 1,002.84원 ▶ 욕탕용 : 479.59원

※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2011. 12. 19 개정)

기대 효과

- ◆ 수도사업 재정 건전화로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시행일

2012. 3월부터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지원과(3146-1183)

3 하수도 요금 인상

- ◆ 하수도 요금이 2005. 5월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되어 재정악화 심화
- ◆ 노후된 하수관거 개량, 하천 방류수질 개선 등 신규투자수요

사업 개요

- ◆ 인상내역 : 2011년 대비 평균 35% 인상
 - 2011년 평균 283원/㎥에서 2012년에 382원/㎥로 99원 인상
 - 가정용 1단계(0-30㎥)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60원 인상
 - ※ 3인가족 기준 월평균 17㎥사용시 월 2,720원에서 3,740원으로 1,020원 추가부담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업 종	사용구분(㎥)	㎥당 단가(원)	
		현 행	2012년
가 정 용	0~30이하	160	220
	30초과~50이하	380	510
	50초과	580	780
욕 탕 용 (대중목욕탕용)	0~500이하	180	240
	500초과~2,000이하	220	300
	2,000초과	250	340
공 공 용 (업 무 용)	0~50이하	260	370
	50초과~300이하	390	560
	300초과	440	640
일 반 용 (영 업 용)	0~30이하	170	250
	30초과~50이하	410	550
	50초과~100이하	650	870
	100초과~200이하	790	1,030
	200초과~1,000이하	850	1,080
	1,000초과	880	1,130
※ 유출지하수 1㎥당		170	220

※ 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2011. 12. 19 개정)

시행 일

2012. 3월부터

물재생계획과(2115-7927)

4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변경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국세인 상속세와 일치

사업 개요

- ◆ 상속세(국세) 납부기한과 상속에 따른 취득세(지방세) 납부기한이 달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 초래
 - 종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정해짐
 - ◆ 상속세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 변경으로 상속세와 납부기한과 통일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
(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

달라지는 내용

현 행	변 경
■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대 효과

- ◆ 상속으로 인한 세금납부 시 국세와 지방세 납부기한 일치로 납세자 편의 도모

시행일

2012. 1월(예정)

세제과(3707-8617)

5 사회적기업 세제지원 신설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혜택 마련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

◆ 지원내용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
- 재산세 25% 경감
-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경감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4

달라지는 내용

신규사업

기대 효과

◆ 사회적기업 세제 지원을 통하여 사회취약계층(장애인·노령인구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

시행일

2012. 1월(예정)

세제과(3707-8617)

주택·환경분야

차 례

- 01 _ 희망하우징(대학생 주택) 공급 확대
- 02 _ 옥상녹화지 텃밭 조성
- 03 _ 환경분쟁조정 온라인 시스템 시행
- 04 _ 소음·악취 이동식 자동측정차량 운영
- 05 _ 석면안전관리 제도 시행
- 06 _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07 _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 08 _ 수돗물 염소 분산주입 시행
- 09 _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 확대
- 10 _ 스마트폰이면 한강공원도 내 손바닥 안에

1 희망하우징(대학생 주택) 공급 확대

◆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완화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자녀 및 아동복지시설 퇴거 대학생
- ◆ 대상지역 : 대학가 주변 및 교통 환경 우수 지역(주택) 우선 고려
- ◆ 입주조건 : 시중임대료의 약 1/3 수준 월임대료 책정 후 공급
- ◆ 사업방법
 - 다가구 주택 매입 후 대학생용 전환 물량 확대
 - 뉴타운/정비사업 구역 내 임대주택, 부분임대 아파트 공급
 - 노후공사 개보수 후 대학생 임대
 - 시·구유지 활용 임대주택 신축
 - 노후 다가구주택 재건축
 - 정비사업구역 내 대학교 기숙사 건립



<성북구 정릉동 희망하우징 공사>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다가구주택 매입 후 대학생용 전환	■ 다양한 공급유형을 통한 공급확대

기대 효과

- ◆ 교통환경 우수지역 확보를 통한 주거편의 도모 및 통학환경 제고
- ◆ 대학생 주거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관·학 협력 활성화

시행일

2012. 1월부터

주택정책과(3707-8596)

2 옥상녹화지 텃밭 조성

- ◆ 옥상녹화지 내에 텃밭을 도입하여 건물이용자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사업 개요

- ◆ 사업대상 : 옥상녹화사업 추진 건축물 (생태녹지, 텃밭 등 조성)
- ◆ 지원내용 : 1㎡당 90천원 지원(최대 992㎡, 사업비의 50% 한도)

달라지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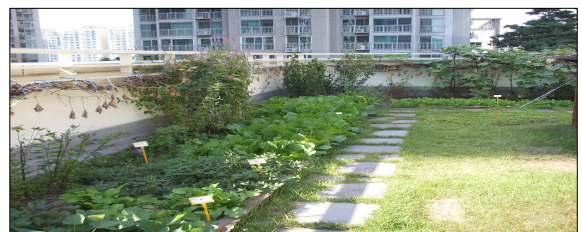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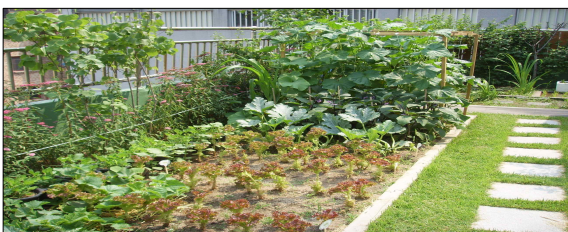
종 전	변 경
■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및 휴게시설물 설치 위주로 설계 및 공사	■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텃밭을 일부 도입하여 체험과 생산의 공간으로 조성 추진

기대 효과

- ◆ 건물이용자, 지역주민 등이 만나서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 제공
- ◆ 생활권 가까이 여가생활 장소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시행 일

2012. 1월부터



조경과(2115-7614)

3 환경분쟁조정 온라인 시스템 시행

- ◆ 소음, 진동, 대기 등 환경분쟁조정에 대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신뢰감 있는 분쟁해결 제공

사업 개요

- ◆ 사업대상 : 환경 분쟁 사항이 있는 시민 누구나
- ◆ 온라인 시스템 주소 : <http://edc.seoul.go.kr>
- ◆ 사업내용
 - 온라인을 통한 분쟁사건 신청, 접수 및 민원상담
 - 사건진행 처리과정 열람 및 유사 분쟁사건 안내
 - 온라인 위원회 운영 및 행정절차 간소화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방문접수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온라인 접수 병행 실시

기대 효과

-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환경분쟁조정제도 온라인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처리기간 단축 9개월 → 6개월 이내)
- ◆ 분쟁조정위원의 분야별 전문가 참여강화로 신뢰감 있는 분쟁 해결

시행 일

2012. 1월부터

생활환경과(2115-7494)

4 소음·악취 이동식 자동측정차량 운영

- ◆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음 및 악취 민원의 효율적 저감과 발생시설에 대한 과학적 관리 및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사업 개요

- ◆ 사업대상 : 소음 및 악취 민원발생 공사장·사업장
- ◆ 사업내용
 - 국내 최초로 이동식 자동측정장치 설치된 차량 확보 및 운영
 - ▶ 소음 측정장비 탑재한 차량 5대 확보
 - ▶ 악취 이동 측정 차량 1대 확보
 - 24시간 실시간 측정 및 감시로 기준 위반 시 개선조치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소음, 악취 민원발생시 현장 확인한 후 소음측정 및 악취 검사를 실시 ■ 기준 위반사례 현장 점검 및 확인 곤란	■ 민원발생 사업장 및 예상지역에 24시간 측정차량 배치감시하여 기준 위반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예방활동 강화

기대 효과

- ◆ 선진화된 자동측정장치 도입을 통한 과학적 관리로 기준 위반여부 관리 수단 확보 및 사전예방 효과
- ◆ 신속한 측정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민원저감

시행 일

2012. 1월부터

생활환경과(2115-7412)

5 석면안전관리 제도 시행

- ◆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안전관리 시행

사업 개요

- ◆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 ◆ 정비사업 공사장의 석면의 비산농도를 측정 후 결과 공개
 - ◆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석면조사 의무화
 -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공개
 - 석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 ※ 근거 : 「석면 안전관리법」(2011. 4. 28 제정, 2012. 4. 29 시행)

달라지는 내용

신규사업

기대 효과

- ◆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
- ◆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시행일

2012. 4월부터

생활환경과(2115-7427)

6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 위해 예방

사업 개요

- ◆ 사업대상 :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 21개 시설군 3,200여 개소
- ◆ 사업내용 : 실내 공간 오염물질(10종)의 농도를 기준에 맞게 관리
- ◆ 대상시설 의무사항
 - 실내공기질 측정 : 유지기준 오염물질 연 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 2년 1회
 - 시설관리자 1년 이내 신규교육,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각 6시간)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관리대상	■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17개 시설군	■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 2,000㎡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연면적 500㎡이상), 전시시설 추가로 21개 시설군으로 증가

기대 효과

-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실내환경 마련
 - 학원, PC방 등 법 적용대상 확대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시행일

2012. 1월부터

생활환경과(2115-7473)

7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 ◆ 공급자 위주의 수돗물 관리 및 평가시스템으로 인한 신뢰도의 한계가 있어 424개동에 10명씩의 수돗물 평가단을 운영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수돗물 정책을 시민의 정책으로 전환

사업 개요

- ◆ 사업대상 : 2,120명(424개동 - 동별 5명), 자녀동반 참여시 4,240명
- ◆ 사업방법 : 서울시를 8개권역 나누어 시민단체를 통해 자발적 운영
- ◆ 사업내용 : '수돗물 시민평가단'
 - '아리수 품질 확인제' 검사원을 활용, 평가단과 함께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물을 받은 후 학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수질검사
 - 교육 및 국내 현장 프로그램 진행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시민참여 수돗물 평가(공급자 중심) ▶ 아리수 모니터, 아리수 품질확인제, 아리수 아파트인증 등	■ 시민주도 수돗물 평가(수요자 중심) ▶ 기존관련 사업을 통합해 범시민적 사업으로 추진

기대 효과

- ◆ 시민주도형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 ◆ 수돗물 음용률 제고

시행일

2012. 1월부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3146-1213)

8 수돗물 염소 분산주입 시행

- ◆ 수돗물 공급계통 잔류염소 최적관리를 위해 염소를 정수장에서만 주입 하였으나 배수지에서 분산주입 함으로써 수도꼭지 적정 잔류염소 농도유지로 맛있는 물 공급

사업 개요

- ◆ 배급수계통 재염소 분산주입 시스템 구축·설치 (6개소)
- ◆ 염소 잔류량 상승 미달지역의 경우 장거리 급수 전 배수지에서 주입
- ◆ 분산 주입을 통한 염소 잔류량 적정 유지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정수장에서만 염소 집중 주입 ▶ 근거리 염소냄새 민원 ▶ 장거리 수도꼭지 잔류염소 미달	■ 정수장 및 배수지에서도 분산 주입 ▶ 염소냄새 경감 ▶ 맛있는 물(수도꼭지 0.1~0.3mg/L) 공급

기대 효과

- ◆ 관말 취약지역 잔류염소 0.1mg/l 이상 유지로 미생물로부터 안전성 확보, 소독제 분산 주입으로 염소냄새 경감
- ◆ 건강하고 맛있는 물 공급으로 아리수 음용률 제고

시행 일

2012. 1월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3146-1322)

9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 확대

- ◆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수질 가이드라인 항목 증가에 따라 아리수의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고품질 수질분석 서비스 제공

사업 개요

- ◆ 사업대상 : 서울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도물
- ◆ 사업내용
 - WHO 먹는 물 수질 가이드라인에 연동하여 아리수 검사항목 관리
 - 본부, 연구원 홈페이지 및 “수도물품질보고서”를 통한 검사결과 공개

달라지는 내용

기존사업

종 전	변 경
■ 155항목 수질검사	■ 163항목 수질검사

기대 효과

- ◆ 수질검사 강화로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
- ◆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여 아리수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신뢰도 제고

시행일

2012. 1월부터

상수도연구원 수질연구부(3146-1761)

10 스마트폰이면 한강공원도 내 손바닥 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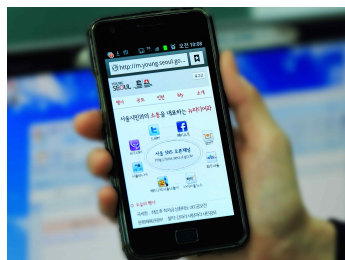
- ◆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한강의 행사, 위치, 각종 시설물 현황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업 개요

- ◆ 사업방법 :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한강이용 시민에게 제공
- ◆ 사업내용
 - 위치기반 한강 즐기기(각종 시설물 검색 및 안내)
 - ▶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한 스마트폰 안내 제공으로 별도 도움 없이 한강을 즐기는 것이 가능
 - 포털사이트 지도연계 서비스(찾아가는 길 지도연계 안내)
 - 스마트폰 연동 증강현실 구현 등
 - ▶ 증강현실을 사용한 주변 시설물 자동 검색으로 편리성 제공
 - 다국어 버전(영어 기본) 개발, 한강공원 자전거 안내 등
 - QR코드 프로그램 및 해당 장소 부착

달라지는 내용

신규사업



기대 효과

- ◆ 서울시민 및 외국인에게 편리한 한강 즐기기 제공
- ◆ 증강현실을 사용하여 한강 주변 시설물을 편리하게 사용

시행일

2012. 2월(예정)

한강사업본부 총무과(3780-0771)

교통·안전분야

차 례

- 01_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장소 확대
- 02_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 03_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 04_ 택시운전자 복장 개선
- 05_ 혼잡 환승역에 우측보행 안내사인 설치
- 06_ 교통신호기 무선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 07_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 08_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도입
- 09_ 긴급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시행
- 10_ 노유자시설 소방시설 설치의무 강화
- 11_ 소방특별조사 실시대상 확대

1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장소 확대

- ◆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울시 전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

사업 개요

-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 사업내용 : 서울시 전 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재발급) 가능	■ 모든 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재발급) 가능

기대 효과

- ◆ 서울시 전 주민센터에서 발급으로 편의성 향상
- ◆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관리시스템 개선으로 민원 응대시간 단축

시행 일

2012. 2월부터

교통정책과(6360-4917)

2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 이륜차 법적 신고를 통한 관리강화로 시민 안전 제고

사업 개요

-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 이륜차
 - 2011.12.31까지 구매 : 2012.6.30까지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 2012. 1. 1이후 구매 : 2012. 1. 1부터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 ◆ 신고장소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 50만원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50cc이상 이륜차만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 50cc미만 이륜차도 최고속도 25km/h 이상시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기대 효과

- ◆ 의무보험 가입으로 사고 시 피해보상 가능
- ◆ 이륜차의 무단방치, 도난, 범죄이용 등 예방

시행일

2012. 1월부터

택시물류과(6321-4264)

V 교통·안전분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 및 신고제외 대상

◆ 신고대상(최고속도 25km/h 이상)

구 분	사 진	비 고
스쿠터 등		배기량 : 약48cc 속도 : 약80km/h

◆ 신고대상 제외(최고속도 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구 분	사 진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미니바이크	
전동스쿠터 (노약자용)		모터보드	
어린이용 전동차		ATV (사륜 사발이)	
전기보드			

3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 불량택시 퇴출을 통한 택시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 개선

사업 개요

- ◆ 사업대상 : 법인택시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 ◆ 사업내용
 - 2011.12.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의 행정 처분된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일정점수의 벌점 부과
 - ※ 승차거부, 부당요금 및 합승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5점의 벌점
 - 택시사업자가 부과 받은 벌점이 최근 2년 동안 총 3,000점 이상이 될 경우 택시사업면허 취소
 - ※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

달라지는 내용

신규사업

기대 효과

- ◆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 받아온 택시의 승차거부 등에 대한 위반행위 등 불량택시 퇴출

적용 일

2012. 1월부터

택시물류과(3707-9768)

4 택시운전자 복장 개선

- ◆ 특정복장만을 허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

사업 개요

- ◆ 사업대상 : 법인택시 운전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
- ◆ 사업내용
 - 특정복장만을 획일적으로 허용한 복장기준을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복장으로 자유롭게 개선함
 - 택시운송사업조합, 관련단체, 전문가, 시민의견 및 정부정책(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장기준 개선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획일적인 특정복장만 착용허용 ▶ 개인택시 : 남청색 줄무늬 또는 주황색 줄무늬 와이셔츠 ▶ 법인택시 : 파랑색 줄무늬 또는 하늘색 줄무늬 와이셔츠	■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금지하고 그 이외의 복장은 자유롭게 착용 ▶ 금지복장 : 반바지, 츄리닝, 민소매, 쫄티, 런닝셔츠, 슬리퍼 등

기대 효과

- ◆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자유로워진 근로환경 조성으로 승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
- ◆ 특정복장 이외의 복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원 해소

시행 일

2011. 11월부터

택시물류과(3707-9752)

5 혼잡 환승역에 우측보행 안내사인 설치

- ◆ 보행동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역사 환승통로에 우측보행 안내사인을 설치하여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리한 지하철 이용

사업 개요

- ◆ 사업대상 : 서울역①④, 사당②④, 동대문①④, 신설동①②, 을지로3가②③, 교대②③
- ◆ 선정기준 : 환승역사의 환승통로 구간이 30m 이상인 환승역
- ◆ 사업내용 : 환승통로 진행방향 천장에 화살표(↑)와 X표시를 LED조명과 바닥에 중앙 분리선을 설치

달라지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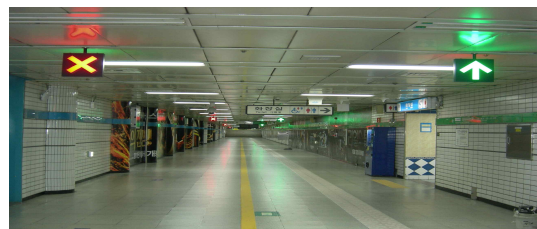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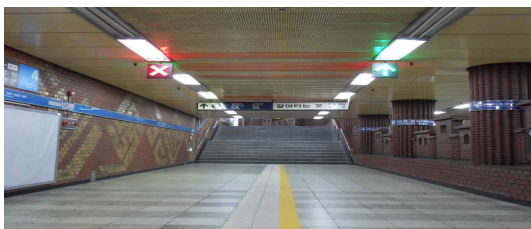
신규사업

기대 효과

- ◆ 우측보행 안내사인 설치로 복잡한 환승통로 이용승객의 이동권 확보
- ◆ 혼잡시 통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행문화개선(우측보행) 정착화 및 편리한 지하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기여

시행 일

2012. 6월(예정)



서울메트로 디자인건축처(6110-5613)

6 교통신호기 무선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 ◆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으로 교통신호운영 사각지대 완전 해소하고 신속 정확한 유지보수 실현

사업 개요

- ◆ 위 치 : 서울시 전역
- ◆ 규 모 : 원격제어시스템(서버)1식, WCMS 단말기 274대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교통신호기 3,561대중 유선망이 연결되지 않은 독립 신호제어기 274대는 신호운영 상태 모니터링 불가 및 인접 교차로와의 연동체계 미비 등의 문제발생	■ 독립 신호제어기의 무선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원격관제 및 제어 가능으로 신호운영 사각지대 완전 해소 (원격 모니터링 및 고장 수리 가능)

기대 효과

- ◆ 원격 관제·제어로 신호운영 유지관리 시간, 비용 획기적 절감
- ◆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으로 교통운영 사각지대 완전 해소

시행 일

2012. 2월(예정)

- 무선원격제어시스템(WCMS)이란?
유선 통신 접속이 어려운 신호기에 무선통신 단말기(가칭 휴대전화)를 설치, 무선으로 중앙컴퓨터와 연결해 신호기를 원거리 제어하는 시스템
※ WCMS(Wireless Control Management System)

교통운영과(6361-3821)

7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 ◆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납부독려

사업 개요

- ◆ 대 상 : 2011. 7. 6 이후 최초로 과태료를 체납한 자로서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60일을 초과한 차량
- ◆ 추진방법



※ 근거 :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자동차 관련 과태료·범칙금 등 체납 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압류 조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등록번호판 영치 등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강화

기대 효과

- ◆ 과태료 상습·고액 체납차량 발생 억제
 - 자동차관련 과태료·범칙금은 체납하여도 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그릇된 사회적 관행 근절
 - 고액체납차량 방치 후 불법 매매(대포차 등)에 따른 시민피해 방지

시행일

2012. 3월부터

교통지도과(6361-3666)

8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도입

- ◆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시설 위주의 토지이용으로 악화된 물순환 시스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이용 관리능력 강화

사업 개요

- ◆ 시설물의 빗물이용관리능력 강화
 - 공공시설은 대형 저류조 설치, 학교·공공청사 등 신축 시 단계적 확충
 - 민간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 유도
 - ▶ 환경영향평가 조건 부여,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소규모 건축물 보조금 지원 등
- ◆ 배수 유역별 빗물관리시설 설치 추진
- ◆ 주택정비사업의 빗물관리시스템 구축
 - ※ 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개발사업시행자의 이익에 따라 시행 (조건부여권장형)	■ 기본계획 수립시 체계적 설치계획 포함 (관련법 등 제도정비 ⇒ 의무화)

기대 효과

- ◆ 빗물을 효과적·경제적으로 분산 배치하여 강우시 수해예방 및 평상시 생활용수로 활용 그린도시 조성
- ◆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물환경시스템 구축

시행 일

2012. 1월부터

물관리정책과(2115-7826)

9 긴급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시행

- ◆ 화재 및 응급 후송차량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사업 개요

- ◆ 긴급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진, 동영상 등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위반사실 증거 확보)
※ 근거 : 「도로교통법」제29조 및 제160조 및 제161조

달라지는 내용

신규사업

기대 효과

- ◆ 긴급차 출동여건 향상으로 신속한 화재 및 응급상황 초기대응에 기여
- ◆ 시민들의 자발적인 진로 양보 등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



시행일

2011. 12월부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3706-1413)

10 노유자시설 소방시설 설치의무 강화

- ◆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을 강화하여 취약대상의 안전 확보

사업 개요

- ◆ 대 상 : 숙박을 제공하는 노인·장애인·아동생활시설
 - ◆ 사업내용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자동 화재탐지 설비·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의무화 및 기존시설 2년간(2014. 2. 4까지) 유예기간 설정
 - 방화 관리자 선임 의무화
-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달라지는 내용

신규사업

시행일

2012. 2월부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방재난본부 예방과(3706-1513)

11 소방특별조사 실시대상 확대

- ◆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사업 개요

◆ 조사대상

- 소방시설, 방화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 불안전할 경우
-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
-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

◆ 조사방법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소방방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참여
- 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기간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함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조사대상	■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국가적 행사 등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

기대 효과

- ◆ 국가적 행사장이나 그 주변의 관계지역, 화재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통한 화재예방

시행일

2012. 2월부터

소방재난본부 예방과(3706-1516)

시민참여분야

차 례

- 01_ 서울시 「공공앱」 무료 서비스 제공 확대
- 02_ 120다산콜센터 앱(App) 상담서비스 개시
- 03_ 차세대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1 서울시 「공공앱」 무료 서비스 제공 확대

- ◆ 서울시 공공정보를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제공

사업 개요

- ◆ 추진대상 : 서울시 보유 공공정보
- ◆ 추진방법
 - 민관협력, 공모전, 용역 등으로 개발된 서울시 공공앱을 시민에게 무료 제공
 - 2011년 공모전 수상작 9종에 대해서는 2012년도 추가 서비스
 - 시민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등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서울시 공공앱 31종에 대해 시민에게 무료 서비스 제공	■ 2011년 공공앱 개발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9종 공공앱 추가 서비스 제공 (총40종)

기대 효과

- ◆ 시 보유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 이를 활용한 다양한 공공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편의 도모 및 시정참여 확대

시행일 2012. 1월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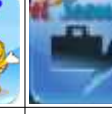
유시티추진담당관(6361-3382)

■ 서울시 공공앱이란?

- ▶ 서울시의 다양한 공공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앱

■ 서울시 공공앱 현황

- ▶ 2011. 12. 현재 무료 비스 제공 대상

									
서울버스2	TBS 교통정보	서울시 위치찾기	서울교통	Let's 서울트래킹	서울안심 먹을거리	천만상상 오아시스	서울문화 즐기기	서울 구두수선	다산 콜센터
									
i Tour Seoul	i Photo Mosaic	대학로 공연정보	서울을 달린다	스마트 서울맵	여행 프로젝트	서울안전 지킴이	세종벨트	말하는 해치	서울119
									
사이렌	마켓 다이렉트	세종앱	tbs eFM 매거진	서울 일자리	서울문화 정보	새주소 안내	서울 분실물정보	서울공공 화장실	Seoul Green Air

■ 2012년 추가 대상

- ▶ Tour In Seoul, Hi Seoul 무인민원발급기, 서울공원, 서울 5대궁, e문화 복덕방, 지하철알림이, 서울의 야경, 서울시 새주소 주민들, EcoSeed 등 총 9종

2 120다산콜센터 앱(App) 상담서비스 개시

- ◆ IT기술의 발전과 시민의 요구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채널의 다양화
- ◆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및 서울생활 외국인도 더욱 편리하게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사업 개요

- ◆ 청각언어장애인 전용 채팅상담(인터넷, 모바일) 채널 개발
- ◆ '120다산콜센터 앱(App)'을 개발하여 기존 모든 서비스 통합
- ◆ SNS 통합상담관리, FAQ지식상담(댓글), 위젯서비스 개발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전화, 문자, 수화, 외국어상담, 원클릭 민원 이메일 상담, 위치안내 등 6개 서비스 운영 ■ 각 시스템이 개별 접속 운영	■ '120다산콜센터 앱'에 접속하여 FAQ 검색 및 각 서비스에 접속 가능 ■ 신규서비스 : 앱, 채팅·FAQ지식상담 등 ■ 청각언어장애인 전용서비스 운영 : 채팅상담

기대 효과

- ◆ 청각언어장애인이 긴급 상황 시 의사소통의 장애 최소화
- ◆ 120다산콜센터의 모든 상담서비스를 '앱(App)'에 통합운영으로 편리한 상담서비스 채널 제공

시행일 2011. 11월부터

시민고객담당관(724-1551)

3 차세대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 ◆ 시·자치구 모든 공공서비스 예약 서비스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한번 검색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체계 개선
- ◆ 이용자의 편리성·접근성 증대로 공공서비스예약 온라인 이용률 제고

사업 개요

- ◆ 개별 운영하는 서울시 공공 예약서비스의 전면적 연계·통합
- ◆ 오프라인 예약서비스의 온라인화
- ◆ 서울시 모든 공공서비스 예약 검색이 가능한 사용자 맞춤 포털 구축
- ◆ 국문 / 외국어 / 모바일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 고도화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서울시 공공예약 시스템 사용기관의 서비스에 한해 조회·예약 가능 ※ 서울시 통합 서비스 수 : 1,400여개	■ 각 기관별 별도 운영하는 서울시 모든 공공기관(자치구포함)의 모든 예약 서비스 조회 및 예약 가능 ※ 전 기관 통합 서비스 수: 3~4만여개

기대 효과

- ◆ 한 곳에서 서울시 모든 공공서비스 조회할 수 있는 차세대 예약 포털 구현으로 행정서비스의 신뢰도 및 접근성 제고
-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온라인 이용률 제고

시행일

2011. 11월부터

정보화기획담당관(6361-3139)

중앙부처 달라지는 제도

세제분야	106
공정거래 · 금융 · 조달분야	109
산업(중소기업 · 특허)분야	111
환경 · 국토분야	114
보건복지 · 여성분야	124
고용노동분야	128
법무 · 행정 · 안전분야	131
보훈 · 국방 · 병무분야	132
교육 · 문화분야	135
농식품 · 산림분야	137

01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2-2150-4241)

- 2012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가 폐지**되므로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됨
 - * 대상 :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자
-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에서 예정고지로 전환

02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건 조기경정신청 제도 시행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2-481-7988)

- 2012.1월 중으로 세관장으로부터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의사가 없을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조기에 세액을 확정 받을 수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 경과 후 경정처분과 비교 시 가산세 부담이 없음
 - * 부족세액 10억 과세 전 통보 후 30일 동안 가산세 : 390만원

03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

- 친환경 건물의 확산 및 친환경·녹색성장의 생활화를 위해 일정 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등급별 구분에 따라 3~15%씩, 최초 인증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감면

0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9)

-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 예정
- 1,000cc의 경우 2만원, 3,000cc의 경우 6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국민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05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02-2100-5979)

● 2012.1.1일부터 지방세 납부체계를 온라인으로 전환

- 지방세 고지서 지참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 조회·납부 가능

01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02-2023-4527)

- 2012.1.1일부터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계약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납품계약의 추정제도 실시**

*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등 확인하고자 하는 계약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 대형유통업체에서 회신이 없으면 확인 요청한대로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02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02-2023-4378)

-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4.1일 거래행위부터 내부거래 공시 범위를 확대

* (거래금액기준) 공시대상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이상인 거래행위 →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 (계열회사 범위)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소유 → 100분의 20이상

03 금융투자업자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56-9874)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02-3145-7591)

- 2012.1월 중 금융투자업의 본질인 위험인수 및 자본공급 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고위험투자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NCR 규제를 완화
 - 주식보유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기준 완화,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 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한 위험액 산정방식 합리화 등

04 우수조달물품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 시스템 마련

조달청 우수제품과(070-4056-7295)

- 2012.1.1일부터 기술 변별력 있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사기준 개선
 - 신기술제품의 평가기준 및 일반제품의 기술점수 상향조정, 기술성능향상 비교평가 등 기술변별력 강화

01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 강화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02-2110-4889)

- 2012.5.15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짜 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
 -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적발 사실 공표는 지금까지 인터넷 게시로만 이루어졌으나, 향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내 직접 게시
 - 영업시설 개조 등 악의적인 가짜석유 취급 적발 시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제한하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토록 함
 -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석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신설

02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042-481-4541)

- 2012.1.26일부터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03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042-481-4561)

- 2012.1.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 전자상품권은 기프트 카드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04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4)

- 2012.1.1일부터 372개 업종(현재 84개)의 기업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며,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도 인정
- 기업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유예
- 2012년 중 1인 창조기업 맞춤형 금융 시스템 구축(유자·투자펀드, R&D 등), 판로망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05 상품과다 지정 상표 출원에 대한 수수료 가산제도 도입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042-481-5255)

- 2012.4.1일부터 저장상표의 폐단방지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 제도 정립을 위해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1지정 상품당 2,000원의 가산료 추가 납부
- 현재 상표출원료, 등록료는 지정상품수에 상관없이 상품류수만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과다하게 지정하는 경향

01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환경부 생활환경과(02-2110-6815, 6909)

- 2012.1.1일부터 국민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17개* 시설 외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을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02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제도 시행

환경부 교통환경과(02-2110-6808)

- 2012.1.1일부터 국내에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으로 $140 + 0.0588 \times (M^* - 1,423.2)$ 의 식에 의해 결정

* M: 제작사가 한 해 동안 판매한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kg)

** 사례) A제작사가 한해동안 판매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이 1,423.2kg일 경우 A제작사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140g/km

03 하수도 사용료 등 정보공개 제도 시행

환경부 생활하수과(02-2110-6888)

- 2012.4.6일부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 사용료가 정해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총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함

04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확대 적용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02-2110-6776)

- 2012.1.1일부터 중유 중 황 함유량이 경기도의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등 3개 지역은 기존 0.5%에서 0.3%이하, 경기도 가평군 등 63개 시군은 1%이하 지역에서 0.5% 이하 지역으로 강화
 - * 0.3% 이하 공급·사용: 특광역시 등 59개소와 제주전역
 - ** 0.5%이하: 104개소 시·군, 1.0%이하: 그 외 지역
- 저황유 사용 사업장에서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저황유로 교체사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05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환경부 수도정책과(02-2110-6874)

- 2012.1.29일부터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기존의 현금 납부계좌 이체방법 외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하여 납부방법을 다양화

06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2-2110-7613)

- 환경성평가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일부 절차가 중복되고, 협의기간이 장기화 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12.7.22부터는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 *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07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2-2110-6936)

- 2012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지자체별 단계적으로 시행
 -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144개 시·구가 대상

08 매매/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02-2110-8264)

- 아파트 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실거래가 확인 가능
- 전월세 실거래가는 2011.12.3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매매 실거래가는 2012.3월 예정으로 추진

09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02-2110-8260)

-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일정 수량을 안정적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2012.1월 예정)
- 사업주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10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02-2110-6221)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시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2012년말까지 1년 연장 시행
지원금리 인하(연 4.7 → 4.2%),
지원대상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4 → 5천만원 이하)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2 → 3천만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금리 2~4%)

11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02-2110-8249)

- 2012.8.5일부터 임차인의 실제거주 및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 시행
 - 민간이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관할 시·군·구청장,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조사
 - 주거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출 후부터 일몰 전 시행

12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031-436-8973)

- 2012.8.1일부터 시·군·구청 또는 지적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지적측량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해 24시간 무방문 지적측량 상담 신청 가능
 - 지적측량 바로처리 포털을 통해 온라인 지적측량 상담 신청 접수는 물론 진행상황결과 확인, 다운로드 가능
 - 측량 신청 준비서류인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기부등본은 바로처리센터를 통해 확인

13 지적선진화 사업 본격 추진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031-436-8951)

- 2012.3.17일부터 2030년까지 전국 3,761만여 필지의 지적을 정비하고 국제기준에 맞추는 선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
 - 전국 약 15%에 이르는 지적불부합 지역의 재조사를 통해 새로 정비하고, 13%에 달하는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 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할 계획
 - 전국 약 72%에 해당하는 기존 지적도에 대해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

14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02-2110-8358)

- 2012년 상반기 중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지급 확인제를 시행 예정

15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방법 개선(On-line)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02-2110-6197)

- 2012.7.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원주민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을 통하여 편리하게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음

* 가스료·전기료·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세대당 60만원/연)

-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인은 많은 서류(22종)를 제출하였으나 7월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전산망과 행복e음간 시스템 연계로 신청서류 없이 On-line 자격조사 가능

16 목포 ~ 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02-2110-6437)

- 목포 ~ 광양 구간은 당초 2012년 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2012.5.12~8.12)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2.4월 조기 개통
- 목포 ~ 광양 구간 개통으로 주행거리 39.6km(146.4 → 106.8km) 및 주행시간 46분(110 → 64분) 단축

17 표준형 접이식 플라스틱 포장용기 사용 상용화(R&D)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9)

- 2012.1.1일부터 친환경적이고 일관수송체계구축이 가능한 접이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구입해서 농업용·공업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 가능
- 다양한 방식과 규격의 용기사용에 따른 수송, 보관, 운반, 하역과정에서의 포장해체 및 재포장 등 부가적인 작업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18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02-2110-8569)

- 여객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출항 전에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2012년 하반기)

19 해상에서 휴대전화 통달거리 확대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02-2110-6388)

- 2012.1.1일부터 해상에서 휴대폰 통달거리가 연안 10~20km이내에서 50~80km로 확대

20 국제선 여객 유류 할증료 개편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02-2110-6475)

- 2012.1.1일부터 해외 항공 여행시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부과노선을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유류할증료 변경주기 단축 (2개월→ 1개월)
- 전체 여행객 차원에서는 연간 약 5.6%(약 1,356억원)의 유류할증료 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

< 1인당 유류할증료 변경 예시(편도) >

(항공유가 : ₩ 300 ~ ₩ 309/gal)

현행(\$)				개편안(\$)						
부산- 후쿠오카	일본, 산둥성	단거리*	장거리*	일본, 산둥성	중국, 동북아	동남아	CIS, 서남아	중동, 대양주	유럽, 아프리카	미주
29	32	62	140	27 (△15.6%)	47 (△24.2%)	62 (-)	74 (19.3%)	135 (△3.6%)	158 (12.9%)	165 (17.9%)

* 단거리 : 아시아(중국포함) 지역, 장거리 : 중동, 대양주, 유럽, 미주 등

01 노안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2-2023-7418)

- 2012.7.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께 50%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게 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예정
- 2012.4.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금액을 확대 (40 → 50만원)

02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2-2023-8934)

- 2012.1.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지원

* (기존) 36개월 미만 차상위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

03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7369)

- 2012.1.1일부터 아동(만12세이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동과 보호자가 더 편리하게, 비용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1회당 비용이 낮아지고(15천원 → 5천원), 지원 의료기관 확대(253개 보건소 → 7천여 의료기관)
 - 저녁시간, 주말 등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지원 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

04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심혈관·희귀질환과(043-719-8686)

- 2012.1.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133종 → 134종), 간병비지원 대상질환(8종 → 11종) 및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질환(8종 → 10종) 확대
 -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
- *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이내),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

05 의약품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043-719-2703)

- 의약품에 기인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약화사고 발생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시행

0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075-8709)

- 2012.1.1일부터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완화를 위하여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의 본인부담액 인하(시간당 4 → 3천원)
-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의 본인부담도 인하(월 40 → 30만원)

07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범위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075-8713)

- 2012.1.1일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
 - 첫째자녀 연령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12년부터는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

0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관리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075-8783)

- 2012.3.16일부터 보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인터넷상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고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에게 까지 확대 고지 등

01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2-2110-7317)

- 2012.1.1일부터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월 80→ 월 100만원)
- 또한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월 120~480 → 월 120~520만원)
- 산단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도 신설하여 설치비의 90% 지원(15억원 한도)

02 50+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02-2110-7315)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 지원 예정(2012.1월)

0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2-2110-7204)

- 2012.1.22일부터 50인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수급요건)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지급금액 및 일수)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3~6개월 지급

04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2-6902-8019)

- 2012.7.1일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 및 노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자 부담분 차등(1/2, 1/3) 지원

05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2-2110-7392)

● 2012.1.1일부터 최저임금의 시간급 인상(4,320 → 4,580원)

- 일급(8시간 기준) 36,640원,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제) 957,220원

01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6)

- 2012.2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 가능하고, 선발인원도 확대할 예정

* 2009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신규채용인원의 1%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으로 별도 구분하여 선발

0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체계 구축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02-2100-5263)

- 2012.3.9일부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인·허가 전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제도, 피난안전구역, 종합방재실 의무 설치 등

01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02-2020-5179)

- 2012.1월부터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인상 수준을 감안하여 2011년 대비 보상금을 약 4%를 인상 예정

02 이등병 주치의 개념의 건강상담 실시

국방부 보건정책과(02-748-6655)

- 2012.1.1일부터 자대에 전입한 이등병을 대상으로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과 1:1건강 상담을 2차례 실시

- 1차는 이등병의 자대 전입 초, 2차는 신병위로 휴가 출발 전 실시

03 국군 생명의 전화 확대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4)

- 2012.1.1일부터 육군에서 운영하는 「생명의 전화」를 개인신상 문제를 포함하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복무부적응 조기 해결을 위해 전군에 확대하여 「국군 생명의 전화(0179)」운영
- 유능한 외부전문가 5명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하여 24시간 운영하며, 민간 상담전화 운영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

04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

병무청 징병검사와(042-481-2916)

- 2012.1.1일부터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제2국민역 처분제도를 폐지
- 병역을 면제 받은 후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등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 사례가 있어 폐지

05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전면 확대

병무청 현역입영과(042-481-2716)

- 2012.1.1일부터 현역병 입영대상자부터는 고졸 이하자와 각급 학교의 졸업예정자에게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를 확대
- 현행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대학재학생 등 연기 중인 사람 위주로 운영

06 고교 졸업 후 산업체 등에 취업시 24세까지 입영 연기

병무청 현역입영과(042-481-2715)

- 2012.1.1일부터 고졸자에 대한 학력 간 차별해소 및 사회전반의 고졸채용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특성화고교 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교를 졸업 후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24세까지 입영 연기 가능
-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과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취업자는 제외

01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02-750-2541)

- 2012년 1/4분기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서비스 이외에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도 요금감면을 시행할 예정
-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도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자로 확대

02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02-750-2556)

- 2012.5.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

*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udle): 가입자 식별코드

03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시험과목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팀 (02-3704-9782)

- 2012.1.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01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02-500-1815)

- 2012.1.2일부터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월별 균등 분할 상환)

02 구제역 백신비용 50% 부담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02-500-1528)

- 2012.1.1일부터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 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부담하여야 함
- 전업규모 이하 소·돼지 농가와 염소·사슴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

03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02-500-2097)

● 2012.4.11일부터 음식물 원산지 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시행

-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표시범위를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
-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외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 추가

04 농약 판매업 무등록자 통신·전화권유 판매 금지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031-299-2605)

● 2012.1.26일부터 농약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청소년 대상 농약판매 등 일체의 행위 금지

- 불법판매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12년 달라지는 제도
바로 알기 & 바로 알리기